

(국민의힘, 용산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의원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 ·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산2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조례 체계 내 권한 위임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별표 4의 제2호 · 제3호는 ‘자유표시구역’ 광고
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으
나, 본문 규정(제31조 단서)은 자유표시구역 관련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석과 집행상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에 별표 4의 해당 조항에서 부과권자를 ‘자치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정정하여, 본문과 별표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집행 혼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유표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자치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안 별표 4 제2호 · 제3호).

이번 정비를 통해 권한 귀속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의 예측가능성과 집행 일관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지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